

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(제46조제1항 관련)

종 류	진 단 내 용
<p>종합진단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경영·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</li> <li>나. 안전·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</li> <li>다.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·운영,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</li> <li>라.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</li> </ol> </li> <li>2.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(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)</li> <li>3.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</li> <li>4.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기계·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</li> <li>나. 폭발성·물반응성·자기반응성·자기발열성 물질, 자연발화성 액체·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</li> <li>다. 전기·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</li> <li>라. 추락, 붕괴, 낙하, 비래(飛來) 등으로 인한 위험성</li> <li>마. 그 밖에 기계·기구·설비·장치·구축물·시설물·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</li> <li>바.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,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·습도·환기·소음·진동·분진,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</li> </ol> </li> <li>5. 보호구, 안전·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</li> <li>6. 유해물질의 사용·보관·저장,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,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</li> <li>7.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·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li> </ol>
<p>안전진단</p>	<p>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·제3호,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</p>
<p>보건진단</p>	<p>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·제3호, 제4호바목, 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, 제6호 및 제7호</p>